

공정시장과 약자동행

22대 총선과 대리운전법

대리운전법과
카카오드라이버
- 김 종용회장
(사)전국대리기사협회

장우식의 시사토픽

경인방송 90.7 MHz

장우식의 시사토픽

장우식의 시사토픽

<이슈 인터뷰>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뜨거운 사람들과의 만남

<고정 코너>
월 : 타박타박인천 목 : 문화특목
화 : 경기의경중계달 금 : 이슈인선
수 : 경제전망대



방송명 : 시사파토크
DJ : 장우식
PD : 김성민
거침없는 인터뷰,
맥락을 짚어내는 해설,
청취자 여러분의
이질시간을 채워드립니다

월-금 pm07시~pm09시




(사)전국 TV
대리기사협회

wedrivers.net

T. 1666-5634

[머리말]대리운전법 자료집에 거는 기대
[자료1]성명:원혜영 대리운전업법 환영한다
[자료2]논평:유령으로 태어난 대리기사
[자료3]해설: 원혜영대리운전업법(안)
[자료4]원혜영의원 대리운전업법안
[자료5]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 본 내용들은 유튜브채널들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티비baroTV> <전국대리기사협회TV>

대리운전법 자료집 발간에 거는 기대

- 공정시장과 처우개선, 법제화로 그 기반 다져야



김 종용 회장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국민과 국가의 앞날을 결정지을 중대한 행사가 온 국민들 앞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런 국회의원 총선거는 대리운전업계로서도 매우 중대한 행사입니다.

무엇보다 그간의 법적사각지대에서 온갖 편법과 횡포로 운영되어온 대리운전업계가 전반적 개선을 위한 제도화의 기틀을 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운전은 이미 우리 사회에 친숙하게 정착된 생활 서비스로서, 음주운전 방지와 교통사고 예방 및 소비자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를 책임지는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규모도 커져서 연매출 수조원에 달하고, 종사자들만도 20만명이 넘는 등 적잖은 규모의 업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 대표적 법적 사각지대, 편법과 횡포로 얼룩진 대리시장

매일밤이면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대리기사가 움켜쥔 핸들에 의존해 이동귀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과 제도는 전무한 채, 대리기사와 소비자, 대리업자간의 분쟁이 끊임없고 요금체계와 사고보험, 근로계약 하나 정립되지 못한 채, 편법과 불법상태로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예컨데 심야이동을 해야하는 대리기사들에게 심야이동권 보장을 위한 순환차량조차 불법으로 금지되어있는 등, 정상시장을 위해 교통관련법, 금융과 보험관련법, 공정거래법, 노동관계법 등 법적 정비가 필수적 입니다.

대리운전종사자들은 법적 보호는 커녕 무법적 유령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시장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까지 해야 하는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 소비자와 업체, 대리기사가 함께 하는 공정 시스템과 풍토

우리는 대리기사들이 어려우니 대리기사만을 위한 무슨 특별한 혜택을 달라하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와 대리운전업자, 대리기사 등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3주체간의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시스템과 풍토를 조성하고 제도화하여 공정시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토대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고, 대리업체는 무한 경쟁과 덤핑 경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며, 대리기사는 열심히 살아가는 생활인의 처우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 각 정당과 후보진영의 정책협약을 호소합니다

사실 그간 대리운전법 제정노력은 20년이 넘는 동안 차고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정치권 또한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관심을 보여왔고 본 협회의 대리운전법 제정 캠페인과 함께 이미 지난 국회에서 몇차례에 걸쳐 대리운전업법안이 입법발의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이런 노력들은 각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번번히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그간의 활동성과와 한계를 모아서 대리운전업계의 문제점과 대안들을 공론화하고 각 정당 및 후보진영에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법제화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각 정당 및 국회의원 후보진영에 대리운전법 제정을 약속하는 정책협약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협약 서명자료를 첨부하며 참고로 본 협회 발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리운전 정책자료집>을 내놓습니다.

급박한 정치상황과 바쁜 중에도 각 정당 및 후보 진영의 많은 관심과 소통있기를 호소드립니다.

2024년 3월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장 김종용 올림

[자료1] 원혜영대리운전업법 환영한다



▲ 8.13일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의원이 대리운전업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2013년 대리운전법 국회토론회 광경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오늘,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운전업법안을 환영합니다.

대리운전업은 이미 음주운전의 방지, 교통사고의 예방,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라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친숙한 생활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의 공박한 상황과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는 무법상태를 악용한 시장의 횡포는 시장의 건전한 발전은 커녕, 대리기사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 대리기사가 위험합니다. 시민의 귀가길이 위험합니다.

이미 대리운전시장은 정상적 영업과 경영을 통해 먹고사는 시장이 아닌게 되버린 지 오래입니다. 고율의 수수료에 대리보험료 착복, 벌금이니 관리비니 부당이득 강요, 무도한 배차제한에 더해 이제는 기사를 더욱 옥죄이는 기사등급제까지 시행하면서, 갈수록 횡포가 극심해져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자인 카카오 역시 고율의 수수료 부과, 대리기사 무한모집 등 다양한 시장 교란을 꾀하며, 시장의 병폐에 편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밤 손님 차량의 핸들을 움켜쥔 대리기사들이 그 손아귀에 억울함과 서러움이 가득한데 어떻게 손님과의 안전하고 편안한 운행길이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업자

와 대리기사간의, 그리고 손님과 대리기사간의 분류는 끊임없고, 촌각을 다투는 시간싸움과 난폭운전에 서비스 질은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9대 국회 회기 중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러한 시장의 문제를 개선하고 소비자와 대리업체, 대리기사 등 시장 구성 3주체간 합리적 정비와 공정한 거래를 위해 대리운전업법 캠페인을 벌여왔고 저희의 이런 뜻에 맞춰 문병호의원은 2013년 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을 입법발의 하였습니다. 대리기사들의 참여와 단결권을 보장하는 최초의 획기적 법안이었습니다.

아쉽게도 19대 국회 완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그 법안은 이제 20대 국회 들어 원혜영의원의 관심과 배려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원의원실과 본 협회는 그간 합리적 내용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제정의 용이성을 위해 많은 노력과 함께 조정과 타협을 거듭해왔던 것입니다.

이는 근로대중의 민생 안정과 사회정의를 위해 노력해온 원혜영의원의 관심과 인간적 풍모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원혜영의원의 이러한 노력은 서민대중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정의에 충실히 기여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이번 원혜영의원 법안의 대표발의를 계기로 보다 풍부하게 관련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기를 바랍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리운전서비스, 공정한 대리운전시장, 대리운전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정비라는 사회적 과제는 여와 야를 떠나 이 시대의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급박한 민생현안 중 하나입니다.

시장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조사하고 잘못된 관행과 풍토를 척결하며 시급히 합리적 대안이 될 대리운전업법을 제정하길 전국 수많은 대리기사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원혜영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정치권과 행정당국의 많은 노력과 조치를 호소합니다.

2016. 8. 13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자료2]논평_유령으로 태어난 대리기사



"한국에는 유령이 있다. 술을 마시고 있으면 홀연히 찾아와 안전하게 집까지 차를 운전해주고 사라지는 유령이 있다"

모 외신에서 한국의 대리기사를 소개한 내용이라 합니다.

밤늦은 어느 시각 어느 구석에서도, 전화 한통하면 어느새 찾아와 손님의 차량을 운전해주고, 도착지에서 손님을 뒤로 한 채 어두운 밤길로 홀연히 사라지는 유령, 바로 대한민국의 대리기사들입니다.

그들 손아귀에 쥐어진 몇푼 운행비는 노잣돈이라도 되는 걸까요?

이미 우리 사회에서 20만이 넘도록 존재하는 일꾼들이지만,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유령과도 같은 존재, 바로 대리기사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유령들로 채워진 나라가 아니라면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줘야 합니다.

노잣돈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밥먹고 살 수 있는 생계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존재를 인정하고 그 대책을 세워줘야 합니다.

"수탈과 무도한 횡포가 대리업체의 수익구조?"

음주운전의 방지와 교통사고의 예방,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 대리기사들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입니다. 매일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대리기사가 움켜쥔 핸들에 의존해서 귀가하는 현실입니다. 이미 그 수많은 종사자들과 함께 연매출 3조원이니 4조원이니, 결코 적잖은 규모의 직업군을 이루고 있는 업종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는 물론 최소한의 정책조치 부재한 현실 속에서 대리운전시장이 처한 현실은 야만적이고 참담하기만 합니다.

대리운전 시장은 이미 업체의 정상적 운영과 영업을 통해 먹고사는 시장이 아닌 지 오래인 것입니다. 이러한 무법천지의 현실과 대리기사들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한 대리운전업자들의 횡포는 이미 세상에서 악명높습니다. 고율의 수수료, 보험료 착복, 벌금과 관리비 강탈, 기사장사, 무도한 배차제한.... 시장의 파렴치한 현실을 나타내는 키워드입니다.

"대리기사가 행복하면 세상이 몽땅 행복하다" - 2016, 대리기사 위한 한해 되소서

업자들의 무한 횡포, 각종 병폐와 차가운 냉대에 맞서 권익과 생존권, 단결을 위한 대리기사들의 활동은 처절하고 때로는 참담합니다. 이 사회를 중의 울이라 불리는 대리기사, 우리 사회 가장 밑바닥에서 생존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하지만 손님 차의 핸들을 움켜쥔 대리기사들의 손아귀에 원통함과 처량함이 가득한데, 어찌 안전한 운행길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이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와 처우개선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들이야말로 궁극적으로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리운전서비스를 담보할 것입니다.

공정한 대리운전시장, 대리운전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정비라는 사회적 과제는 이제 이 시대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급박한 민생현안 중 하나가 되버렸습니다.

사회 가장 밑바닥 생활이기에 이들의 존재 조건과 환경이야말로 우리 사회 현실의 민낯을 그대로 들여다보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 대리기사가 행복하면 세상이 몽땅 행복하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겠습니다.

[자료3] 원혜영 대리운전업법안 해설

1. "대리운전업법안" 발의 변천사..

- 2003년 04월 04일 목요상의원 외
- 2004년 10월 27일 정의화의원 외 11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652
- 2005년 04월 11일 정의화의원 외 12인 발의함. 의안번호_1624(수정발의)
- 2008년 09월 16일 송영길의원 외 21인이 발의함
- 2009년 06월 03일 손숙미의원 외 10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5024
- 2009년 10월 23일 정의화의원 외 11인 발의함. 의안번호_6353(수정발의)
- 2012년 09월 07일 강기윤의원 외 09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1666
- 2013년 07월 04일 문병호의원 외 11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5876
- 2013년 07월 29일 이미경의원 외 17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6179
- 2015년 02월 13일 김윤덕의원 외 10인이 발의함. 의안번호 13977
- 2016년 08월 22일 원혜영의원 외 10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1735

17대 국회에서부터 목요상, 정의화, 송영길, 손숙미, 강기윤, 문병호, 이미경, 김윤덕, 원혜영의원외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원들이 대리운전업법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19대 국회 들어 2013년 통합민주당의 문병호의원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와 함께 작성한 대리운전업법안을 대표발의하기까지, 모든 법안은 시장 구성의 한 주체인 대리기사들은 배제한 채, 대리운전업자 일방의 시장 장악과 기사 통제 내용만을 다룬 법안이었기에 현장의 반발이 심했고 부실하고 무성의한 내용이다보니 어떤 동력도 마련하지 못한 채,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

2. 문병호대리운전업법 대표발의와 의미

2013년, 드디어 국회 문병호의원은 대리운전업법을 대표발의 한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가 추진해 왔던 법안이다. 이제 최초로 대리기사의 단결권과 권익보호를 담은 대리운전업법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또한 그간 단순한 불평불만자에 불과했던 대리기사들이 법제정운동의 주체이자, 대중운동의 한 축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었다.

2016년, 20대국회 들어 원혜영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대리기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대리운전업법을 대표발의한다.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대리운전업법 입법운동은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다.

3. 원혜영 대리운전업법안의 내용과 의미

원혜영 대리운전업법 제정의 기본 취지는 시장 구성의 3주체간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정비를 통해 시장의 분규를 예방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다.

- 제안이유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국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하여 부실한 대리운전업체의 난립, 부적합한 대리운전자의 고용,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행위 등 각종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자격, 대리운전보험에 대한 가입의무화,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행위 금지 등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리운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생계형 서민들인 대리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리운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즉, 소비자의 권리보장, 대리운전업체와 대리기사의 자격과 권한 설정, 표준약관 등 제도적 체계 완비, 대리업자와 대리기사간 동등한 자격과 권한의 연합회 구성을 통해 시장 운영의 참여 보장, 부당행위 금지와 처벌 조항 명시 및 강화 등이다.

1) 시장 정비:

- 3조 대리운전업의 등록
- 4조 결격사유
- 5조 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
- 6조 대리운전자교육
- 7조 대리운전자 신고
- 12조 대리운전자의 준수사항
- 16조 대리운전자격의 취소 등

- 2) 제도적 체계완비:
8조 대리운전약관
- 3) 소비자 권리보호
9조 대리운전보험의 가입
- 4) 대리업자의 의무조항
11조 대리운전업자의 준수사항
- 5) 대리기사의 단결권 보장, 시장 운영 주체의 지위 보장
제13조 대리운전연합회
- 6) 부당행위 금지와 처벌강화
11조 2항 3항

15조 등록취소 등 6항
21조 과태료

4. 기타: 대리운전업법과 노동법개정의 관계

문병호의원과 원혜영의원의 법안을 비롯, 그간의 모든 법안은 대리기사를 자영업자 혹은 자유업으로 여기고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차후 노동관련법의 제/개정을 통해 대리기사가 노동자로 분류된다면 근로기준법과 노동3권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경우 대리운전업법의 내용이 달라져야 할 것인데, 두 경우는 각기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내용은 차후 별도로 논의코자 한다.

[자료4]원혜영의원 대리운전업법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6. 8. .

발 의 자 : 원혜영, 김영춘·김정우·김철민·민병두·박
남춘·박주민·심상정·윤후덕·이찬열·정성호
의원

제안이유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국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하여 부실한 대리운전업체의 난립, 부적합한 대리운전자의 고용,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행위 등 각종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자격, 대리운전보험에 대한 가입의무화,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행위 금지 등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리운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생계형 서민들인 대리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리운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대리운전자는 21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3년 이상의 운전경력과 대리운전에 필요한 교육 이수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5조).

- 다.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운전과 교통안전 관련 법규, 대리운전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6조).
- 라. 대리운전업자는 소속 대리운전자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
- 마.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업을 등록하는 때에 대리운전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8조).
- 바. 대리운전업자나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또는 재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또는 본인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9조).
- 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대리운전업무에 종사, 대리운전자에 대한 부당행위 금지 등 대리운전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아. 대리운전자신고필증 소지, 대리운전자격증 및 대리운전자신고필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대리운전보험 가입 의무 등 대리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자. 대리운전종사자는 대리운전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업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차.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9조).

<대리운전업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리운전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리운전"이란 자동차의 사용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이용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그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와 고객을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2. "대리운전업"이란 대리운전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대리운전업자"란 제3조에 따라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대리운전자"란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대리운전업의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대리운전업의 등록 등) ①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영업에 사용하는 전화번호, 영업소 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2. 대리운전보험 계약 체결 증명 서류
 3. 자본금이 1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대리운전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② 제 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대리운전업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 절차, 방법 및 대리운전업등록필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리운전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조(대리운전자의 자격 요건) ①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1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를 보유할 것
 2. 자동차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3. 제6조에 따른 대리운전자교육을 이수할 것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리운전을 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대리운전자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
 -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부터 제5조의11까지 및 제11조의 죄
 - 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3. 제16조제3호의 사유로 대리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운전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대리운전자교육) ①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이하 "대리운전자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대리운전업법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 방법
 5.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 ②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자교육을 받지 아니한 대리운전자를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시·도지사는 대리운전자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리운전자교육이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운전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대리운전자 신고 등) ① 대리운전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대리운전자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대리운전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대리운전자를 신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리운전자격증
2. 제6조제3항에 따른 대리운전자교육이수증명서
3. 대리운전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증명서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운전자 각

각에 대하여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대리운전업자는 소속 대리운전자가 퇴직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리운전자의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⑤ 대리운전 신고 절차,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의 교부, 그 밖에 대리운전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리운전약관) ① 대리운전업자는 제3조에 따라 대리운전업을 등록하는 때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대리운전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1. 대리운전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행위로 인하여 부과되는 범칙금의 납부
2. 제9조에 따른 대리운전보험의 가입
3. 대리운전자의 처우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대리운전약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대리운전보험의 가입 등) ① 대리운전업자나 대리운전자는 소속 대리운전자 또는 본인의 대리운전으로 고객이나 그 밖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대리운전자각각이나 본인에 대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하 "대리운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자는 대리운전보험의 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는 고객이 자동차손해배상의 보장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의 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액 및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대리운전 자동차의 제한)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자로 하여금 대리운전업자의 자동차 등 고객의 자동차 또는 고객이 요구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객을 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대리운전업자의 준수사항) ①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자격증을 갖춘 자만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대리운전업자는 과잉수수료나 부당이득금 부과, 특정보험 가입 강요 등 대리운전자에게 부당행위 및 부당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 및 부당이득의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대리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을 하는 때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이하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이라 한다)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 ② 대리운전자는 자신이 취득한 운전면허로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대리운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자자격증 및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대리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대리운전자는 퇴직하는 때에 소속 대리운전업자에게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대리운전연합회) ① 대리운전자 등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대리운전종사자"라 한다)은 대리운전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업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대리운전종사자의 협력과 상생을 위한 대리운전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연합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 ④ 설립인가, 연합회 정관의 기재사항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① 대리운전업자 또는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요금, 보험가입 사실·내용 등을 허위표시하거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대리운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경우
 - 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리운전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경우
 - 5. 제10조를 위반하여 고객의 자동차 또는 고객이 요구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객을 운송하도록 한 경우
 - 6.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7.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대리운전업자는 등록이 취소된 때나 사업이 정지된 기간 중에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대리운전업에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대리운전자격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대리운전 중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6. 이 조에 따른 자격정지기간 중에 대리운전을 한 경우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7조(청문) 시·도지사는 제15조에 따라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6조에 따라 대리운전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하게 한 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고객의 자동차나 고객이 요구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객을 운송하도록 한 자
5. 제15조에 따른 사업정지 기간 중에 대리운전업을 한 자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리운전 요금 등을 허위표시하거나 과대광고를 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각각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리운전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대리운전에 관한 사업등록을 하고 대리운전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3조,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의 등록, 대리운전자의 신고, 대리운전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제3조(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조 및 제1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자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할 수 있다.

■[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대리기사권익운동과 함께 탄생 성장해왔습니다.

2010년대 초반, 고율의 수수료와 각종 기사장사, 일방적 배차제한 등, 대리운전시장의 부당한 풍토에 맞서 헌신적 활동을 펼쳐가던 대리기사들은 그 성과를 모아 2013년 전국대리기사협회를 결성하였고, 그 활동을 인정받아 업계 최초로 당국으로부터 사단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인가를 동시에 받아냈습니다.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의 활동 및 각종 정무사업, 대리운전업법 제정과 대리운전 뉴스 발간 등, 각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아가며 대리운전시장의 현실을 공론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과 해법을 추구해왔습니다. 또한 법정투쟁을 통해 업자들의 부당한 방해를 막아내고 렌터카대리보험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수년간의 활동을 통해 드디어 이동노동자쉼터사업을 성사시키고 대리기사마스크 배포 확대, 고용안정지원정책 추진 등, 대리기사의 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유례없는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또한 유튜브 등 각종 온라인사업을 활발히 펼쳐가며 조직확대사업도 꾸준히 전개하고 오비맥주와 다트협회 등 사업체들과 매년 음주운전방지캠페인을 벌여나가며 대리운전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협회활동은 물론, 대리기사의 권익과 업무환경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법적사각지대와 불합리한 풍토에 놓여있는 현실은 소비자와 대리업체, 그리고 대리기사 간 끊임없는 시장의 분류를 낳고 있고 업계 종사자 모두의 사회 경제적 처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묵묵히 꾸준히 실천해가며 공정시장과 처우개선, 그리고 사회안전망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저희는 고대합니다.



- 회원 가입 바로가기  (사)전국대리기사협회 온라인 가입신청
- 대표전화: 1666-5634
- 이메일: wedrivers@daum.net 또는 wedrivers@naver.com
- 유튜브: 전국대리기사협회TV, 바로티비baroTV
- 사이트: <http://www.wedrivers.net>
 다음카페: cafe.daum.net/wedrivers
 네이버카페(비공개): <http://cafe.naver.com/wedrivers>
- 밴드: band.us/@wedrivers
- 트위터: www.twitter.com/drmanzok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 페이스북: www.facebook.com/drmanzok
- 김종용의 브런치: brunch.co.kr/@drmanzok
- 주소: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88-7 평안빌딩 3층 (우편번호 04617)



- 1) 권익향상 사업
- 2) 교육 및 정보교류를 통한 자질향상 사업
- 3) 상호부조와 후생복지 및 친목 사업
- 4) 대리기사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사업
- 5) 대리운전신문과 유튜브 등 언론 사업
- 6) 협회 운영을 위한 수익 사업

(사)전국TV
대리기사협회
